



Samil Global Tax Update

Nov 2018

주요 조세동향 및 세법 개정사항

네덜란드 네덜란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 수정안

스페인 스페인 주요 세법 개정안 소개

중국 중국 개인소득세 개정 상세안 관련 공개 초안

프랑스 조세포탈 대응을 위한 조세범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주요 조세동향 및 세법 개정사항

네덜란드

- 네덜란드 정부는 9 월 세법 개정안 초안 공개 (2018년 10 월 Global Tax Update 참조) 후, 추가 논의를 거쳐 10 월 15 일 최종 정부 개정안을 발표함
- 법인세율의 추가 인하
 - 당초 발표된 네덜란드 개정세법에 따르면, 현행 법인세 저세율 20% (과표 €200,000 이하) / 고세율 25% (과표 €200,000 초과)가 향후 3 년간 다음과 같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예정이었음
 - 2019년: 24.3%/19%
 - 2020년: 23.9%/17.5%
 - 2021년: 22.25%/16%
 - 이와 관련하여 10 월 15 일에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하여 2021년 적용 법인세율을 다음과 같이 추가 인하할 것으로 예고함 (19년, 20년 적용 세율은 기존 개정안과 동일).
 - 과표 €200,000 이하: 15%
 - 과표 €200,000 초과: 20.5%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기한의 연장
 - 숙련된 외국인 전문가를 네덜란드로 유입하기 위해 도입된 Thirty Percent Ruling 은 외국인 근로소득의 70%만을 과세하는 제도임
 - 이번 수정안에서는 과세특례기한이 2019년과 2020년에 종료되는 근로자들의 납세의무 부담을 줄이고 네덜란드의 산업 성장을 위해 현행

과세특례기한을 2021년까지 최대 2년 연장하기로 함

• R&D 관련 Tax credit 공제율 증가

- 연구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임금 비용과 연구개발을 위하여 소요된 기타 비용의 합이 € 350,000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2%의 비율만큼 회사가 납부해야 할 Payroll tax 에서 공제되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14%의 비율로 공제됨
- 2020년도부터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16%의 비율로 공제율을 인상하는 수정안이 제시됨
- Payroll Tax 는 Wage tax 와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등으로 구성되며, 회사는 급여 등에서 원천징수하여 과세당국에 납부하게 되나, R&D tax credit 상당액 만큼 기업이 다시 환급 받는 효과(rebate)가 발생하므로 연구개발 활동이 장려될 것으로 기대됨

• Fiscal Unity 수정 법안의 소급 적용 기한 변경

- Fiscal Unity regime 제도의 적용과 관련하여 최근 EU의 판단에 근거하여 네덜란드 과세당국에서 Fiscal Unity regime 의 수정법안을 마련하였으며 동 수정법안 (Fiscal Unity Emergency Repair Act)의 소급 적용 시점을 기존의 2017년 10월 25일에서, 이번 수정안에서는 소급 적용 기간을 2018년 1월 1일로 변경함

• PwC Observation

- 네덜란드는 금번 개정안 발표를 통해 법인세율 추가 인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기한의 연장, R&D 공제율

인상 등을 포함함으로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기존 정책 기조를 더욱 공고히 함

- 한편, Fiscal Unity regime 수정 법안과 관련하여 기업별로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분에 대한 Appeal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수정 법안 사항이 향후 연도에 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다각적인 분석이 요구됨

스페인

- 스페인 정부는 10 월 11 일 최저한세, 디지털 서비스세 신설 등을 포함한 2019년 개정세 법안 초안을 발표함. 동 초안은 Blue print 수준이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회 비준을 위해 세부 법안을 제출하는 시점에 구체화 될 것임
- **Participation Exemption(배당소득면제)**
감면비율의 축소

- 기존에는 해외자회사로부터 스페인 법인이 수령한 배당소득 및 자본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과세소득에서 면제하였음
- 개정안에 따르면, 관련 배당소득 및 자본소득에 대한 감면 비율을 95%로 축소하여 적용함
-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서 대해서는 감면비율 축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내 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 및 자본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음
- 이와 같이 배당소득 등의 원천에 따라 배당소득면제규정 적용이 상이하게 된다면 EU 규정과의 상충 여부에 대한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음

- **대기업 최저한세 규정 도입**

- 개정안에서는 과세소득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최저한세를 도입하였음
- 최저한세는 연결과세 대상 기업들 및 개별 기업으로 연간 매출액 2,000 만 유로 이상의 대기업에 적용됨
- 최저한세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소득은 회계상 이익이 아닌 세법에 따라 산출된 과세소득을 의미함
- 최저한세 비율은 일반 법인세율이 25%가 적용되는 법인들에게는 15%로 적용되나, 30%의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일부 금융기관, 석유·가스 채광업 등에 대해서는 18%로 적용됨
- 이러한 최저한세 도입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 특히, 각종 세액공제 감면 등(산출세액의 50%를 적용 한도로 함)을 통해 세부담을 완화시켜온 기업들의 경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스페인이 해외 국가와 체결한 많은 조세조약에 의하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다른 국가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스페인의 국내 조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저한세 적용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현재 불분명함

- **금융거래세 도입**

- 스페인 주식 취득에 대해 0.2%의 금융거래세(Financial Transaction Tax) 가 과세될 예정임
- 이러한 금융거래세는 주식구매 주문을 실제로 실행하는 금융 운용자('financial operators')가 납세의무자가 됨

- 과세 대상 주식은 시가총액이 10 억 유로를 초과하는 스페인 기업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스페인 주식시장에 상장되어야 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다수 담고 있으므로 향후 최종 입법안이 도출될 경우 동 법안이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요구됨

● 디지털서비스세 도입

- 디지털 서비스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하여 3%로 과세되는 디지털서비스세(Digital Service Tax)를 도입
- 디지털서비스세의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를 바탕으로 함
 - 온라인 광고 서비스
 - 온라인 중개 서비스(i.e. Marketplaces)
 - 온라인 정보 서비스
- 디지털서비스세는 연간 세계 매출액이 7 억 5 천만 유로 이상이며 스페인 내 매출액이 연간 300 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과세됨. 여기서 매출액 기준이 기업의 전체 매출액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위에서 언급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매출액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음
- 한편, 이러한 DST 의 도입 계획은 EU 차원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Digital Services Tax Directive 의 전개에 따라 실제 법제화 여부가 판단될 것임

● PwC Observation

- 스페인 정부 및 집권여당이 다수당이 아닌 점을 고려시 실제 입법화 과정에서 일부 법안의 폐기 및 개정 등의 협의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현재의 초안을 기초로 볼 때 스페인 내국 기업뿐 아니라 스페인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글로벌 기업에 중요한

중국

●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세부 공개 초안 발행

- 2018년 8월 31일 중국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으며(9월 Global Tax Update 참조), 10월 21일 이에 대한 세부 시행 세칙에 대한 공개 초안이 발표되었음.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득원천지와 과세소득범위의 조정 및 변화

- 개정안에서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 기준으로 '183 일' 기준을 도입하였으며, 이번 세부안에서는 '5-year rule'을 추가하여 183 일의 적용 기간을 명확히 함
- 다음의 경우 중국 내 주소가 없는 개인은 중국에서 무제한 납세의무 부담
 - 만 183 일을 거주한 연도가 연속해서 만 5년이 되지 않거나
 - 만 183 일을 거주한 연도가 연속해서 만 5년이 되었으나, 그 기간 중 한번에 30 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경을 나간 적이 있는 경우
- 개정안에서는 근로소득과 원고료 소득 및 사용료 소득을 '포괄이익(Comprehensive Income)'으로 규정함으로써 과세소득 분류를 총 11 개에서 9 개로 재정비함. 이에 따라 세부안에서는 재정비된 과세소득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한 국외원천소득과 외국납부세액공제 산출방식을 명확히

함. 동시에, 경제의 디지털화 추세에 발 맞추어 향후 발생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소득항목에 대해 원천지 판정을 할 때 도움이 되도록 조정의 여지를 남겨두었음.

- "경영소득" 범위의 명확화: 특히 개인이 중국 경내에 등록된 개인독자기업, 파트너십기업을 통하여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고 취득한 소득은 경영소득의 범위에 해당됨을 명확히 함
- 개인이 파트너십기업 재산에 대한 지분을 양도하고 취득한 소득은 "재산양도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 특별부가공제 정책의 구체화

- 기본공제금액을 확대하고 또한 자녀교육비, 주요 의료비 공제, 주택 대출 이자, 임대료, 연장자 부양 공제 등과 같은 특정 공제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함으로써 특별 부가 공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함
 - 6 개 특별부가공제의 동시 실시
 - 주로 정액 위주의 공제기준 설정
 - 증빙요구는 상대적으로 간단(향후 조사 대비 자료보존 위주: 이른바 "备査")
 - 예납시 공제 적용은 임금급여소득에만 하용하고, 기타 종합소득 항목 취득 시에는 연말 신고납부를 통하여 공제 진행
 - 제출한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납세인이 책임 부담
 - 특별부가공제에 대해서는 향후 동태 조정 메커니즘 수립

● 외국국적 개인의 비현금보조에 대한 면세혜택과 특별부가공제의 적용

- 일부 특별부가공제 항목과 현행 외국국적 개인이 면세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는 일부 비현금보조항목은 중복되는 면이 있어, 외국국적 개인에 대한 면세혜택정책이 향후에도 계속해서 유지될지 여부에 대해 큰 관심을 야기시킨 바 있음
- 이번 세부안에서는 동일한 종류의 지출에 대해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적용 받을 수는 없음을 원칙으로 하여, 공제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국적 개인은 특별부가공제와 현행 면세우대정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조세회피방지규정 포함

- 소득세법에 정상거래원칙(Arm's length principle), 유보소득합산과세제도(CFC rules) 및 일반적 조세회피방지규정(GAAR)과 같은 조세회피방지 관련 내용을 포함함

● 연말정산납부 요구사항의 명확화

- 고유한 납세자 식별 번호, 당국간의 정보 공유 및 포괄이익이 존재하는 거주자가 연중 종합소득세 정산 신고를 하게 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소득세 신고 납부 제도를 법인 기반에서 개인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함.
- 이에 기반하여 연말정산납부의 전반적인 요구사항 지침을 제공하여 필수적 신고의무와 선택적 신고의무를 구분함. 환급세액은 당해 6 월 30 일 신고기한까지 적법하게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한 점을 강조함
- 이는 납세의무자의 납세 신고를 간소화하는 한편 세무당국의 업무부담을 감소 시킬 것으로 기대됨

● PwC Observation

- 동 소득세법 개정 발표는 중국의 장기 소득세제 개편 계획에 있어 주요한 행보로, 최근 38 년 동안의 개정 중 가장 획기적인 것임
-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사료됨
 - 소득세법 관련된 신고 및 납부 부담의 가중
 - 개정에 따라 기업 내 보상 관련 정책의 수정 필요성
- 세무조사를 거부하여 100%의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 소득 및 거래 은닉, 세법 남용, 또는 사기를 통해 80%의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 무신고 또는 고의적인 부정행위로 인해 40%의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과거 6 년 기간 내 이미 40% 또는 80%의 가산세가 부과되었거나 조세범처벌법 절차가 개시된 이력이 있는 경우

프랑스

- 조세포탈 대응을 위해 조세범처벌법 적용 대상 확대

- 10 월 10 일 프랑스 의회는 조세포탈 대응을 위해 신설 법안을 채택하였음
- 기존에는 프랑스 과세당국이 조세포탈에 대한 검찰조사 필요 여부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지만, 새로운 법안에서는 납세의무가 €100,000 을 초과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검찰에 이를 이전하여 검찰이 조세범 처벌 절차 개시 여부를 조사하도록 강제함

- PwC Observation

- 프랑스 법무부의 사전 분석에 의하면 상기 강화된 법안을 적용 시 조세범처벌 절차가 개시되는 사례가 2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프랑스 내 조세범처벌법 적용 관련 규정이 강화된 바 프랑스 진출 한국기업의 현지 조세 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요함

Contact

Global Tax Services 본부

이중현, Partner

02 709 0598

alexlee@samil.com

김주덕, Partner

02 709 0707

michaelkim@samil.com

김찬규, Partner

02 709 6415

ckyukim@samil.com

김홍현, Partner

02 709 3320

hhkim@samil.com

박인대, Partner

02 3781 3268

idpark@samil.com

박태진, Partner

02 709 8833

tjpark@samil.com

전원업, Partner

02 3781 2599

wychon@samil.com

조정환, Partner

02 709 8895

jhwancho@samil.com

이경민, Partner

02 3781 1550

kyungmlee@samil.com

이동열, Partner

02 3781 9812

dyoullee@samil.com

삼일회계법인 Global Tax Services 본부는 국제조세전문 컨설팅조직으로서 전문성과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외 다국적기업이 해외신규투자/인수합병/운영/철수 시 직면하는 각종 이슈에 대한 최상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